

상 품 요 약 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유니버설달
러종신보험 Plus (보증비용부과형)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상 품 요 약 서

◆ 상품의 특이사항 및 보험가입 자격요건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관계 관련 용어

1.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4.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5.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② 지급사유 관련 용어

1. 재해

약관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2. 장해

약관 (별표 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3.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1.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2.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본보험금액

보험가입금액을 말하며, 중도인출이 있을 때에는 인출 전 기본보험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 추가납입이 있을 때에는 추가납입 전 기본보험금액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5. 최저사망보험금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로 보장해주는 사망보험금입니다.

④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1.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2.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3. 월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1개월마다 돌아오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⑤ 보험료 관련 용어

1.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로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기본보험료 이외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최소 추가납입보험료는 100달러이며, 기본보험료가 100달러 미만일 경우 최소 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100%로 합니다.

【해약환급금보증형 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해당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납입이 가능합니다.

【해약환급금미보증형 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납입이 가능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는 기본보험료 납입 여부와 무관하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3.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1) 계약자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는 다음을 따릅니다.

-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는 총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납입총액(기본보험료 × 12 × 납입기간)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간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는 연간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의 12배)의 100%와 연간 납입한 총 기본보험료의 100% 중 큰 금액으로 하되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축소될 수 있습니다.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 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선납보험료 포함) 총액의 100%에서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약관 제33조의3(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따른 (추가)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추가)중도인출금액 만큼 추가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요약]

구 분	납 입 한 도
총납입한도	기본보험료 × 12 × 납입기간 × 100%
연간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연간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의 12배)의 100%와 연간 납입한 총 기본보험료의 100% 중 큰 금액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기본보험료 × 기본보험료 납입횟수 + 선납보험료) × 1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2) (1)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보험료의 연간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는 미(美)국고채수익률이 이 계약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연복리 1.5%)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미(美)국고채수익률은 미(美)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가 공시하는 10년만기 국고채권의 수익률로 합니다.
- (3) 보험료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1)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 (4) 약관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및 제6항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동일 비율로 변경하므로 이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도 변경됩니다.

4. 위험보험료

주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납입하는 보

보험료를 말합니다.

5. 이미 납입한 보험료

- (1)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다만, 특약보험료는 제외)를 말하며, 약관 제33조의3(계약자적립액의 인출)에 의해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2) 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다만,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정상적으로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3) 약관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에 따라 해당월의 특약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해약환급금에서 월대체공제액으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그 공제된 특약보험료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차감합니다.

⑥ 적립액 및 보증 관련 용어

1. 계약자적립액

납입보험료에서 월대체공제액 및 중도인출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일자계산에 의하여 특별계정에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2. 예정계약자적립액

납입보험료에서 월대체공제액 및 중도인출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이 계약의 「적용이율」로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3. 최저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보증형 계약에 적용되는 용어로,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해약환급금으로서 예정계약자적립액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4.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

해약환급금보증형 계약에 적용되는 용어로,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해약환급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5.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해약환급금미보증형 계약에 적용되는 용어로, 보험료 기본납입기간 2년(24개월) 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예정해약환급금이 “0”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6.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해약환급금미보증형 계약에 적용되는 용어로,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⑦ 월대체공제액 및 기타 용어

1. 월대체공제액

【해약환급금보증형 계약】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른 월대체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

㉠ 월대체공제액은 다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납입면제 위험보험료 포함)

㉢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보험료 비례 및 계약자적립액 비례)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 위의 항목 중에서 ㉡ 및 ㉢ 중 계약자적립액 비례 보증비용은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 중 계약자적립액 비례 보증비용은 계약일 이후 최초로 차감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납입한 기본보험료에서 ㉡, ㉢ 중 보험료 비례 보증비용, ㉣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중 보험료비례 보증비용, ㉣은 해당 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때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 ㉡에도 불구하고, 기본보험료를 해당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할 경우, 월대체공제액은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

㉠ 월대체공제액은 다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납입면제 위험보험료 포함)

㉢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보험료 비례 및 계약자적립액 비례)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

㉤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특약은 제외)

㉡ 월대체공제액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하며,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보험료 비례) 및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은 보험료 납입할 때 공제합니다.

㉡ ㉡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합계액 이상을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의 기본보험료를 월계약해당일보다 늦게 납입하는 등의 사유로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계약 중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잔액이 없고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의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보험료 비례) 및 계약관리비용 등은 보험료를 납입할 때 공제합니다. 다만,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계약자적립액 비례)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하며, 보험료 납입 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에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합니다.

【해약환급금이보증형 계약】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른 월대체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

㉠ 월대체공제액은 다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납입면제 위험보험료 포함)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계약자적립액 비례)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 위의 항목 중에서 ㉡ 및 ㉢은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계약자적립액 비례) ㉢은 계약일 이후 최초로 차감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납입한 기본보험료에서 ㉡, ㉣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은 해당 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때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 ㉠에도 불구하고, 기본보험료를 해당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할 경우, 월대체공제액은 해당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

㉠ 월대체공제액은 다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납입면제 위험보험료 포함)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계약자적립액 비례)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

㉤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특약은 제외)

㉠ 월대체공제액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하며, 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은 보험료를 납입할 때 공제합니다.

㉠ ㉠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합계액 이상을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의 기본보험료를 월계약해당일보다 늦게 납입하는 등의 사유로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계약 중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잔액이 없고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

에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 등은 보험료를 납입할 때 공제합니다. 다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계약자적립액 비례)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내에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하며, 보험료 납입 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에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합니다.

⑧ 해약환급금보증형 계약의 생활자금 선지급 관련 용어

1.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

최초 생활자금을 선지급하기 직전 보험가입금액에 아래의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1) 계약 체결시 선택한 생활자금 지급기간이 5년일 경우 : 18.0%
- (2) 계약 체결시 선택한 생활자금 지급기간이 10년일 경우 : 9.0%
- (3) 계약 체결시 선택한 생활자금 지급기간이 15년일 경우 : 6.0%
- (4) 계약 체결시 선택한 생활자금 지급기간이 20년일 경우 : 4.5%
- (5) 계약 체결시 선택한 생활자금 지급기간이 25년일 경우 : 3.6%

2. 생활자금

생활자금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기본)해약환급금(기본보험료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말하며, 이하 “(기본)해약환급금” 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3. 생활자금 개시나이, 생활자금 개시일

“생활자금 개시나이”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선택한 피보험자의 나이로, 최초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나이를 말하며, “생활자금 개시일”은 “생활자금 개시나이” 세 연계약해당일(계약일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하며, 해당 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하며, 이하 “연계약해당일” 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4. 생활자금 지급기간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선택한 생활자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기간입니다.

- (1) 생활자금 지급기간이 5년일 경우 : 피보험자의 “생활자금개시나이” 세 계약해당일부터 “생활자금개시나이 + 4” 세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
- (2) 생활자금 지급기간이 10년일 경우 : 피보험자의 “생활자금개시나이” 세 계약해당일부터 “생활자금개시나이 + 9” 세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
- (3) 생활자금 지급기간이 15년일 경우 : 피보험자의 “생활자금개시나이” 세 계약해당일부터 “생활자금개시나이 + 14” 세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
- (4) 생활자금 지급기간이 20년일 경우 : 피보험자의 “생활자금개시나이” 세 계약해당일부터 “생활자금개시나이 + 19” 세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

(5) 생활자금 지급기간이 25년일 경우 : 피보험자의 “생활자금개시나이” 세 계 약해당일부터 “생활자금개시나이 + 24” 세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
 다만,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생활자금 선 지급이 중지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자금이 더 이상 지급되지 않게 되는 경우, 생활자금 지급기간은 해당 선지급 중지 시점까지로 하고 이후 생 활자금은 선지급되지 않습니다.

5. 생활자금 지급일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매년 돌아오는 연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⑨ 장기유지보너스 관련 용어

1.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효한 계약(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이후에 부 활(효력회복)한 경우를 포함)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장기유지보너 스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장기유지 보너스 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에서 정하는 납입한도 계산 시 포함되지 않 습니다.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납입기간	장기유지보너스 금액
계약일로부터 15년 경과시점의 월계약해당일	5년 이상 7년 미만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 10%
	7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 12%
	10년 이상 15년 미만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 15%
	15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 20%
	20년 이상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 25%

2.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은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 계약자가 납 입한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합계액과 보험료 납입기간(다만, 보험료 납입 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15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주계약 기본 보험료 총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 금액은 고려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동 안(다만,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 기간에 한함) 정상적으로 기본보 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봅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Q) 무배당 유니버설달러종신보험 Plus (보증비용부과형)의 해약환급금보증형과 해 약환급금미보증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해약환급금보증형과 해약환급금미보증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해약환급금보증형의 해약환급금은 이 계약의 적용이율로 계산한 해약환급금이 최저보증되는 반면, 해약환급금미보증형의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해약환급금미보증형에 대해서도 공시이율은 최저보증이율(연복리 1.5%)로 보증됩니다.

최저보증의 유무에 따라 보증비용 차감 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따라 해약환급금보증형의 경우 최저해약환급금보증비용(보험료 비례) 및 최저해약환급금보증비용(계약자적립액 비례)가 부가됩니다.

또한 추가납입 시 해약환급금보증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가능하며, 해약환급금미보증형은 보험기간 중에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Q) 보험료 등의 납입과 보험금 등의 지급은 “미화” 로만 가능한가요?

A) 이 상품의 기본통화는 “미화” 로 설정되어 있어 보험료 등을 “미화” 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원할 경우에는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을 통하여 납입 통화를 “원화” 로 변경할 수 있으며, 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을 통하여 지급 통화를 “원화”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환산기준일 및 적용환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 및 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의 약관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Q) 해약환급금보증형의 생활자금 선지급란 무엇이며 어떻게 지급되나요?

A) 해약환급금보증형 가입 시 가장의 경제활동 기간에는 가장의 사망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며, 은퇴 후에는 강액된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기본)해약환급금을 생활자금으로 수령하여 노후를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① 사망보험금의 생활자금 선지급이라 함은 기본보험료 부분에 한하여 생활자금 지급일에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생활자금을 생활자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자금을 나누어 지급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생활자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며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생활자금 선지급 신청을 위한 “생활자금 개시나이”, “생활자금 지급기간” 을 선택합니다. 다만, 생활자금 개시일 당일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한하여 생활자금 선지급이 개시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생활자금 선지급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생활자금 선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대출 잔액(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포함)이 없는 유효한 계약

2. (기본)중도인출을 하지 않은 계약
 3. 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을 모두 납입완료한 계약
 4. 보험료 납입기간이 전부 경과한 이후 5년이 지난 계약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함)이면서, 생활자금 개시일 당일 피보험자의 나이가 55세 이상 및 100세 이내인 계약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이후부터 생활자금 개시일 1개월 이전까지 “생활자금 개시나이”, “생활자금 지급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생활자금을 지급할 경우 생활자금 지급기간 동안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선지급 대상 보험가입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자동감액하고, 감액 부분에 해당하는 (기본)해약환급금을 생활자금 지급일에 계약자에게 생활자금으로 지급합니다.

생활자금 선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유니버설달러종신보험 Plus (보증비용부과형) 해약환급금보증형 계약의 약관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Q)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의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A)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의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계약자가 이 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계약의 전환은 주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환산기준율 및 기준환율은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 및 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에 따릅니다.
- ②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은 주보험 가입할 때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적용합니다. 다만, 장기간병자 관련 위험률은 연금 전환 당시에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위험률을 적용합니다.
- ③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의 전환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 계약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계약
 - 전환 신청 당시의 특약을 제외한 주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약환급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계약
- ④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의 전환은 전환 신청 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15세 이상 80세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 전환할 때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전환 가능나이 및 연금지급개시나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무배당 달러저축전환특약_(전환시점)의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A) 무배당 달러저축전환특약_(전환시점)의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계약자가 이 보험을 「무배당 달러저축전환특약_(전환시점)」을 통해 저축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계약의 전환은 주계약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무배당 달러저축전환특약_(전환시점)」은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를 적용합니다.
- ③ 「무배당 달러저축전환특약_(전환시점)」으로의 전환은 전환 전 계약을 7년 이상 정상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단, 특약(제도성 특약 제외)을 부가한 경우, 전환금액은 전환시점의 주계약 (기본)해약환급금의 90%와 (추가)해약환급금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약(제도성 특약 제외)을 부가하지 않은 경우, 전환금액은 전환시점 당시 전체 주계약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저축전환의 가입금액 한도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최저해약환급금 보증 상품에 경우 최저해약환급금 보증 여부에 따른 비교표 안내

[대표계약기준] 40세, 남자, 가입금액 \$100,000, 20년납, 월납, 고액할인 적용

구분		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	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
보험료 산출이율		연복리 3.00%	연복리 3.00%
최저보증이율		1.50%	
월 보험료		\$274.62	\$264.67 (환급금보증형 대비 3.62% 낮음)
보험료 총액		\$65,908.80	\$63,520.80 (환급금보증형 대비 3.62% 낮음)
비교설명	보험료 수준	미보증형 대비 높음	보증형 대비 낮음
	최저해약 환급금 보증여부	보증	미보증
	최저해약 환급금 보증비용	부과	미부과

환급률	경과기간	최저해약환급금 보증			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		
		최저보증이율	Min(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Min(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10년	63.50%	63.50%	68.99%	60.46%	63.64%	71.50%
	20년	95.47%	95.47%	111.45%	84.01%	92.23%	114.64%
	30년	122.35%	122.35%	169.93%	88.89%	109.64%	174.70%
	40년	159.03%	159.03%	262.20%	86.78%	128.29%	269.53%
	50년	209.54%	209.54%	406.00%	53.15%	148.72%	417.31%
납입완료시점(20년) 누적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 부과율 (금액)		3.66% (\$2,413.94)	3.66% (\$2,413.94)	3.79% (\$2,499.99)	-	-	-

① 보증비용 부과율 = 납입기간까지 부과된 누적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 ÷ 납입기간까지의 누적 보험료

② 위의 예시는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1.50%, 평균공시이율 연복리 2.50%, 공시이율 연복리 4.75%를 적용하였습니다.

※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은 계약 해지 시 최저해약환급금 보증을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상기 비교표의 환급률 차이를 일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 자격요건

○ 보험종류

- 무배당 유니버설달러종신보험 Plus (보증비용부과형)_해약환급금보증형
- 무배당 유니버설달러종신보험 Plus (보증비용부과형)_해약환급금미보증형

○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가입나이 범위								
유형	보험기간	보험기간 유형	납입기간	납입기간 유형	남자(세)		여자(세)	
					최소	최대	최소	최대
보증형	종신	종신	5	년	만15	67	만15	70
보증형	종신	종신	7	년	만15	65	만15	69
보증형	종신	종신	10	년	만15	63	만15	67
보증형	종신	종신	15	년	만15	60	만15	64
보증형	종신	종신	20	년	만15	56	만15	60
보증형	종신	종신	25	년	만15	53	만15	55
보증형	종신	종신	30	년	만15	50	만15	50
보증형	종신	종신	55	세	만15	50	만15	50
보증형	종신	종신	60	세	만15	55	만15	55
보증형	종신	종신	65	세	만15	60	만15	60
보증형	종신	종신	70	세	22	65	23	65
보증형	종신	종신	80	세	21	51	23	62
미보증형	종신	종신	5	년	만15	67	만15	70
미보증형	종신	종신	7	년	만15	65	만15	69
미보증형	종신	종신	10	년	만15	63	만15	67
미보증형	종신	종신	15	년	만15	60	만15	64
미보증형	종신	종신	20	년	만15	56	만15	60
미보증형	종신	종신	25	년	만15	53	만15	55
미보증형	종신	종신	30	년	만15	50	만15	50
미보증형	종신	종신	55	세	만15	50	만15	50
미보증형	종신	종신	60	세	만15	55	만15	55
미보증형	종신	종신	65	세	만15	60	만15	60
미보증형	종신	종신	70	세	22	65	23	65
미보증형	종신	종신	80	세	21	51	23	62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 보험가입금액 가입한도 및 건강진단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

가 입 한 도		가입단위
최 저	최 고	
2만달러	500만달러	1천달러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특약명	최 고 가 입 한 도
무배당 13대달러보험료납입면제특약	1,500달러
무배당 13대달러보험료납입면제특약(페이백형)	1,500달러

※ 위의 가입한도는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및 가입금액, 다른 특약의 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직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및 특약 보험 가입금액, 기계약 사항, 나이, 청약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등을 감안해 건강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무배당 유니버설달러중신보험 Plus (보증비용부과형)

- + 13대달러보험료납입면제특약 (선택특약)
- + 13대달러보험료납입면제특약(페이백형) (선택특약)
- +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 (자동부가특약)
- + 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 (자동부가특약)
- +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 (자동부가특약)
- + 무배당 중신전환특약 (자동부가특약)
- + 무배당 달러저축전환특약_(전환시점)(자동부가특약)
- + 선지급서비스특약 (자동부가특약)
- + 특별조건부인수특약 (자동부가특약)
- + 특정 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자동부가특약)
-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자동부가특약)

※ 무배당 13대달러보험료납입면제특약 또는 무배당 13대달러보험료납입면제 특약(페이백형)을 부가할 경우, 다른 선택특약은 부가할 수 없습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 주보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금액	<p>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을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보험금액 • 계약자적립액 × 101% • 이미 납입한 보험료 <p>(기본보험금액은 보험가입금액을 말합니다.)</p>

- 주) 1. "기본보험금액", "계약자적립액" 및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3조의 2(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내용에 따릅니다. 다만, 해약환급금보증형 계약의 경우 "계약자적립액 × 101%"는 예정계약자적립액과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2. 「공시이율」(연복리 1.5%를 최저보증)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합니다.

□ 무배당 13대달러보험료납입면제특약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험료 납입면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해당 보장개시일 이후 “6대질병”, “4대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중증치매상태”, “일상생활장해상태” 중 한 가지 사유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이 특약의 남은 보험기간에 한하여 차회 이후의 주계약 기본보험료 및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 주) 1. “6대질병”이라 함은 “암(중증 이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관련암 제외)”,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을 말합니다. 다만, “암”의 경우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1-C58(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60-C63(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중 “중증 이외 갑상선암”,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및 특약 약관

에서 정하는 “대장점막내암”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약 약관의 해당 분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4대수술”이라함은 “관상동맥우회술”, “5대장기이식수술”, “대동맥인조혈관 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약 약관의 해당 분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입니다.
4. “중증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중증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5. “일상생활장해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일상생활장해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6.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는 이 특약의 남은 보험기간에 한하여 주계약의 기본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주계약의 기본보험료는 더 이상 납입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7.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무배당 13대달러보험료납입면제특약(페이백형) (선택특약)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페이백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6대질병”,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 확정 받았거나 “4대수술”을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또는 보험기간 중 “일상생활장해보장개시일” 이후에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다만, 페이백보험금은 “6대질병”, “4대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중증치매상태” 또는 “일상생활장해상태” 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50% 페이백형	주계약 총 보험료의 50%
		100% 페이백형	주계약 총 보험료의 100%
		200% 페이백형	주계약 총 보험료의 200%

주) 1. “주계약 총 보험료”란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납입하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총

액(추가납입보험료 제외)을 말합니다. 단, 의무납입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 납입하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을 말합니다.

2. 주계약 기본보험료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의 가입금액 또한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때 별도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8조(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의 남은 보험기간에 한하여 차회 이후의 “주계약의 기본보험료 및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5.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6. “일상생활장해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일상생활장해보장개시일”로 합니다.

7. “중증치매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만 2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중증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8. 보험계약일부터 각각의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중증치매상태”는 “중증치매보장개시일”, “일상생활장해상태”는 “일상생활장해보장개시일”을 말함) 전에 발생한 “암”, “중증치매상태” 또는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중증치매상태” 또는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제8조(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9. “6대질병”이라 함은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을 말합니다. 다만, “암”의 경우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1~C58(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60~C63(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중 제 2 조(“6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2 항에서 정한 “중증 이외 갑상선암”,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및 제 2 조(“6 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3 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서 제외하며 보장하지 않습니다. (별표 4 (“6대질병”의 정의) 참조)

10. “4대수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우회술”, “5대장기이식수술”, “대동맥인조

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을 말합니다. (별표 6 (“4대수술”의 정의) 참조)

11. “고도장애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애분류표 (별표 3 (장애분류표)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80 % 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선지급서비스특약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피보험자의 잔여수명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회사의 신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액(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특약의 사망보험금액을 더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 사망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선지급 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액의 100%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사망보험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과 5,000만원 초과금액의 50%를 합한 금액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별로 통산하여 최고 3억원까지로 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여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대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조건부인수특약

피보험자의 위험도가 높아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피보험자의 진단결과 보험회사가 정한 표준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특약의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증보험료법, 보험금감액법, 연령가산법(연령가산법과 보험금감액법을 같이 사용가능)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특정 신체부위보장제한부 인수형(1종) 또는 특정신체부위 및 특정질병 보장제한부 인수형(2종)을 부가하여 면책기간을 설정한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보험 당사자 간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제한

다음의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시 지급제한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타인의 사망보장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관련 사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계약전 알릴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건강진단을 받은 계약은 1년)이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발생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료 산출기초

1. 적용이율

Q : 적용이율은 무엇인가요?

A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율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무배당 유니버설달려중신보험 Plus (보증비용부과형)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약환급금보증형	해약환급금미보증형
3.00%	3.00%

2. 적용위험률

Q : 적용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무배당 예정 경험 생존사망률	
	남자	여자
20세	0.00025	0.00018
40세	0.00057	0.00041
60세	0.00315	0.00163

3.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Q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A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를 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배당 유니버설달려종신보험 Plus (보증비용부과형)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등

Q :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A :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은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Q : 해약환급금보증형 계약에서 예정계약자적립액 및 최저해약환급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적용되나요?

A : 해약환급금보증형 계약의 경우, 예정계약자적립액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월대채공제액 및 중도인출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이 계약의 적용이율로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예정계약자적립액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저해약환급금이라 합니다. 해약환급금보증형 계약에서는 시중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해약환급금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보증비용 안내]

이 상품은 공시이율과 관계없이 해약환급금(해약환급금 보증형) 및 최저사망보험금(해약환급금 미보증형)을 지급하기 위해 다음의 보증비용을 차감합니다.

구분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	
		계약자 적립액 비례	보험료 비례	계약자 적립액 비례	보험료 비례
해약환급금 보증형	기본보험료	-	-	연 0.15%	2.50%
	추가납입보험료	-	-	연 0.15%	2.50%
해약환급금 미보증형	기본보험료	연 0.15%	-	-	-
	추가납입보험료	연 0.15%	-	-	-

* 계약자적립액 비례(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 : 예정계약자적립액이 계약자적립액보다 클 경우 예정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인출금액 부분에 대하여 재납입할 경우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비례보증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만달러, 20년 월납, 40세, 단위-달러

【 해약환급금보증형 】

생활자금 개시나이: 65세, 생활자금 지급기간: 20년

【 남 자 】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A)	(1) 최저해약환급금			(2)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 2.50%			(3) 공시이율 4.65% 가정		
		생활자금 누계액 (B)	해약 환급금 (C)	환급률 (B+C)/A	생활자금 누계액 (D)	해약 환급금 (E)	환급률 (D+E)/A	생활자금 누계액 (F)	해약 환급금 (G)	환급률 (F+G)/A
3개월	823	0	0	0.00%	0	0	0.00%	0	0	0.00%
6개월	1,647	0	0	0.00%	0	0	0.00%	0	0	0.00%
9개월	2,471	0	0	0.00%	0	0	0.00%	0	0	0.00%
1년	3,295	0	0	0.00%	0	0	0.00%	0	0	0.00%
2년	6,590	0	1,804	27.37%	0	1,804	27.37%	0	1,861	28.25%
3년	9,886	0	4,141	41.89%	0	4,141	41.89%	0	4,272	43.21%
4년	13,181	0	6,532	49.56%	0	6,532	49.56%	0	6,768	51.35%
5년	16,477	0	8,978	54.49%	0	8,978	54.49%	0	9,355	56.78%
10년	32,954	0	20,926	63.50%	0	20,926	63.50%	0	22,616	68.63%
15년	49,431	0	46,131	93.32%	0	46,131	93.32%	0	50,437	102.03%
20년	65,908	0	62,924	95.47%	0	62,924	95.47%	0	72,737	110.36%
30년	65,908	12,958	66,816	121.04%	12,958	66,816	121.04%	17,140	90,396	163.16%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A)	(1) 최저해약환급금			(2)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 2.50%			(3) 공시이율 4.65% 가정		
		생활자금 누계액 (B)	해약 환급금 (C)	환급률 (B+C)/A	생활자금 누계액 (D)	해약 환급금 (E)	환급률 (D+E)/A	생활자금 누계액 (F)	해약 환급금 (G)	환급률 (F+G)/A
40년	65,908	44,403	51,374	145.32%	44,403	51,374	145.32%	64,231	79,223	217.66%

【 여 자 】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A)	(1) 최저해약환급금			(2)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 2.50%			(3) 공시이율 4.65% 가정		
		생활자금 누계액 (B)	해약 환급금 (C)	환급률 (B+C)/A	생활자금 누계액 (D)	해약 환급금 (E)	환급률 (D+E)/A	생활자금 누계액 (F)	해약 환급금 (G)	환급률 (F+G)/A
3개월	752	0	0	0.00%	0	0	0.00%	0	0	0.00%
6개월	1,504	0	0	0.00%	0	0	0.00%	0	0	0.00%
9개월	2,256	0	0	0.00%	0	0	0.00%	0	0	0.00%
1년	3,008	0	0	0.00%	0	0	0.00%	0	0	0.00%
2년	6,017	0	1,600	26.60%	0	1,600	26.60%	0	1,653	27.47%
3년	9,026	0	3,733	41.36%	0	3,733	41.36%	0	3,852	42.68%
4년	12,035	0	5,917	49.17%	0	5,917	49.17%	0	6,132	50.95%
5년	15,044	0	8,153	54.19%	0	8,153	54.19%	0	8,495	56.47%
10년	30,088	0	19,083	63.42%	0	19,083	63.42%	0	20,620	68.53%
15년	45,133	0	42,174	93.44%	0	42,174	93.44%	0	46,089	102.12%
20년	60,177	0	57,643	95.79%	0	57,643	95.79%	0	66,550	110.59%
30년	60,177	11,898	61,493	121.96%	11,898	61,493	121.96%	15,662	82,632	163.34%
40년	60,177	40,769	47,295	146.34%	40,769	47,295	146.34%	58,635	72,468	217.86%

- ① 상기 예시된 최저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계약자적립액을 기초로 산출된 금액으로 적용이율(3.00%)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 ② 최저해약환급금은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 한도의 해약환급금으로서 예정계약자적립액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향후 공시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최저해약환급금"이 '0'보다 큰 기간까지 최저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상기 (2)에서 예시된 2.50%는 '평균공시이율(2.50%)'과 '공시이율 4.65%(2026년 1월 현재)' 중 낮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 ④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⑤ '2.50% 기준의 해약환급금(E)'은 '2.50% 기준의 해약환급금(E)'과 최저해약환급금(C)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⑥ 상기 (3)에서 예시된 4.65%는 '공시이율 4.65%(2026년 1월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⑦ '4.65% 기준의 해약환급금(G)'은 '4.65% 기준의 해약환급금(G)'과 최저해약환급금(C) 중 큰 금액으로 예시됩니다.
- ⑧ 실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 시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⑨ 이 상품은 공시이율이 하락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도 있으나, 공시이율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최저해약환급금(C) 중 많은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⑩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료 납입기일(매월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또는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⑪ 환급률은 경과기간별로 각 시점에서의 해약환급금을 그 시점까지 납입한 납입보험료의 합계로 나눈 비율입니다.
- ⑫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에는 보험료 할인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납입완료시점(20년) 누적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 부과율	최저보증이율	Min(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공시이율
		3.66%	3.66%

- ① 대표계약기준 : 40세, 남자, 가입금액 \$100,000, 20년납, 월납, 고액할인 적용
- ② 보증비용 부과율 = 납입기간까지 부과된 누적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 ÷ 납입기간까지의 누적 보험료
- ③ 위의 예시는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1.50%, 평균공시이율 연복리 2.50%, 공시이율 연복리 4.75%를 적용하였습니다.

※ 이 보험상품은 최저해약환급금을 보증하는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보증비용을 부담하는 상품입니다.

【 해약환급금미보증형 】

【 남 자 】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A)	(1) 최저보증이율 1.50% 가정		(2)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 2.50%		(3) 공시이율 4.65% 가정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해약환급금 (C)	환급률 (C/A)	해약환급금 (D)	환급률 (D/A)
		3개월	794	0	0.00%	0	0.00%
6개월	1,588	0	0.00%	0	0.00%	0	0.00%
9개월	2,382	0	0.00%	0	0.00%	0	0.00%
1년	3,176	0	0.00%	0	0.00%	0	0.00%
2년	6,352	1,737	27.36%	1,775	27.95%	1,857	29.25%
3년	9,528	3,994	41.92%	4,079	42.82%	4,265	44.77%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A)	(1) 최저보증이율 1.50% 가정		(2)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 2.50%		(3) 공시이율 4.65% 가정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해약환급금 (C)	환급률 (C/A)	해약환급금 (D)	환급률 (D/A)
4년	12,704	6,271	49.37%	6,423	50.57%	6,760	53.21%
5년	15,880	8,568	53.95%	8,808	55.47%	9,344	58.84%
10년	31,760	19,201	60.46%	20,212	63.64%	22,591	71.13%
15년	47,640	41,531	87.18%	43,944	92.24%	49,945	104.84%
20년	63,520	53,366	84.01%	58,587	92.23%	72,106	113.52%
30년	63,520	56,466	88.89%	69,645	109.64%	108,739	171.19%
40년	63,520	55,124	86.78%	81,488	128.29%	166,103	261.49%

【 여 자 】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A)	(1) 최저보증이율 1.50% 가정		(2)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 2.50%		(3) 공시이율 4.65% 가정	
		해약환급금 (B)	환급률 (B/A)	해약환급금 (C)	환급률 (C/A)	해약환급금 (D)	환급률 (D/A)
3개월	725	0	0.00%	0	0.00%	0	0.00%
6개월	1,450	0	0.00%	0	0.00%	0	0.00%
9개월	2,176	0	0.00%	0	0.00%	0	0.00%
1년	2,901	0	0.00%	0	0.00%	0	0.00%
2년	5,802	1,542	26.58%	1,576	27.18%	1,651	28.46%
3년	8,704	3,603	41.40%	3,680	42.29%	3,850	44.23%
4년	11,605	5,684	48.98%	5,823	50.18%	6,129	52.81%
5년	14,506	7,786	53.67%	8,004	55.18%	8,491	58.54%
10년	29,013	17,526	60.41%	18,446	63.58%	20,611	71.04%
15년	43,520	38,013	87.35%	40,210	92.39%	45,670	104.94%
20년	58,027	48,993	84.43%	53,739	92.61%	66,020	113.78%
30년	58,027	52,694	90.81%	64,491	111.14%	99,447	171.38%
40년	58,027	54,404	93.76%	76,716	132.21%	151,760	261.53%

- ① 상기 (1)에서 예시된 1.50%는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인 1.50%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상기 (2)에서 예시된 2.50%는 '평균공시이율(2.50%)'과 '공시이율 4.65%(2026년 1월 현재)' 중 낮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 ③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④ 상기 (3)에서 예시된 4.65%는 '공시이율 4.65%(2026년 1월 현재)'를 적용합니다.
- ⑤ 상기 (1) ~ (3)에서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①~④의 이율을 기준으로 각각 산출한 해약환급금입니다.
- ⑥ 실제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공시이율 변동 시 해약환급금도 변동됩니다.

- ⑦ 이 상품은 공시이율이 하락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 ⑧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납입일이 보험료 납입기일(매월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또는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⑨ 환급률은 경과기간별로 “각 시점에서의 해약환급금에 해지 전 생활자금누계액을 더한 금액”을 그 시점까지 납입한 “납입보험료의 합계”로 나눈 비율입니다.
- ⑩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에는 보험료 할인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보험가격지수에 관한 사항

Q : 보험가격지수란 무엇인가요?

A : 해당 상품의 보험료 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기준:40세/월납, 단위:달러]

상품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
			남	여	
무배당 유니버설달러 중신보험 Plus (보증비용부과형) 해약환급금보증형	중신	20년	106.6%	108.3%	100,000
무배당 유니버설달러 중신보험 Plus (보증비용부과형) 해약환급금미보증형	중신	20년	102.8%	104.4%	100,000